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2월 일
발 의 자 : 권 순 정의원의 2 명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07. 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명 개정

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”으로 한다.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변경

▷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
(안 제1조)

3.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 을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”
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 로 한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“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</u>”</p> 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명 “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</u>”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61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. 3. 3(월)

나. 제출자 : 권순정 의원외 3명

다. 위원회 회부 : 2008. 3. 10(월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8. 3. 13(수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석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른 법령 제명 띄어쓰기
▷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”으로 제명 띄어쓰기 함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
▷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(안 제1조)

4. 검토보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